

## 충남 노인인권 실태와 과제

김용현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에서 노인인권에 대한 경각심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전까지 실제적인 노인인권에 대한 접근은 노인차별이나 학대, 일반적 기본권과 자유권의 기본권적 몇몇 항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고 ‘노인학대’의 신고, 조사, 보호 등에 규정이 신설되는 등 제한된 영역 이기는 하나 노인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은 국내 인권 의식의 성장과 그 배경에 힘입은 바 크다.

1990년대 민주화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공표되고, 관련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회가 설립되는 등 ‘인권의 세계화’ 현상에 동참하는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국가인권위원회, 2006)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로서 노인에 대한 인권 신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인의 주거권, 건강권, 사회복지권이라는 세 가지 권리보장을 노인인권 증진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충남지역 노인인권의 항목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충남 노인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 노인인권의 항목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첫째,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을 통한 노인인권 확립 둘째,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권리 보장을 노인인권의 항목으로 뽑을 수 있다.

#### 1)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을 통한 노인인권 확립

노인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

### ● 특집3 \_ 인권으로 행복한 충남

게는 방임, 자기방임, 학대까지 포함되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항목으로는

#### ①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을 보장받는 방안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 사회복지시설이며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권이 보장이 자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여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을 보고 있다.

#### ②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강화이다.

전체 노인학대의 상당부분이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및 감독이 인권적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은 보호를 받는 노인에게 초점이 맞춰졌으며 종사자의 인권은 논의되어지지 못하였다.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인권이다.

#### ③ 노인인권 상담 및 지원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인인권의 특수성은 사회의 인식 및 관심이 부족하고 노인은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인권에 대한 상담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④ 노인인권의 감수성을 고양하기 위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노인의 경우, 노인학대같은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가해자 역시 인권 침해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권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노인 중 절반 이상은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기본권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빈곤문제와 더불어 노인인권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시항은 독거노인과 의존노인의 인권이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 ① 독거노인에 경제적 지원과 건강문제, 정서적 문제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전통적인 효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로까지 이어져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요구된다.

#### ② 의존노인에 대한 적절한 돌봄 제공이 필요하다.

고령 및 장애가 있는 노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의 영위가 힘들게 되므로 타인에 의존하여 가사 및 활동, 간병 등 돌봄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노인이 돌봄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돌봄과 관련되어 노인의 의견과 요구가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어 인권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 ③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근로자의 근무환경, 임금, 노동시간에 등의 인권유린이 방지되어야 한다.

노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결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노인일자리가 부족하여 노인의 근로기회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시장에서 노인들은 연령으로 인한 차별과 편견으로, 참여기회를 갖지 못하고 노인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수 및 근무환경에서 열악하다.

## 노인인권의 실태

상기에서 살펴본 인권항목별로 충청남도 노인이 인권적 측면에서 갖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고찰해보자.

### 1)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을 통한 노인인권 확립

노인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는 시설입소시부터 야기된다. 시설입소시 대부분 동의서를 동반기록에게만 받고 당사자인 입소대상 노인에게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전무하여 인지능력이 결여된 노인의 경우 문을 잠궈놓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바깥공기나 햇빛을 제대로 쬐지 못하는 실정이다. 생활시설의 경우 4인 또는 6인실의 공간들이 많아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고 입소노인에게 서비스의 개별화가 존중되지 않는다. 또 목욕케어가 힘들다는 핑계로 기관을 방문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입소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목욕서비스를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여 일면식없는 목욕봉사자의 서비스로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설운영자의 인권 감수성도 문제이다. 노인의 복지를 이끌어야 할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노인의 인권을 억누르는 간접 가해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입소노인에게 친하다는 주관적 판단하에 모든 말투가 반말인 주 케어자도 인권유린의 주범이다.

또 노인학대 유형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안되는 직원에게 인권에 대한 폭넓은 서비스를 부탁하는 것 역시 무리인 경우이고 노인생활시설에서 학대예방지침에 대한 보건복지부차원의 종사자의 교육이 소홀하거나 전무한 것도 인권유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노인관련 상담창구가 미흡한 것도 문제가 된다. 노인전용 상담 창구가 없어 노인의 인권 등 전문상담 기관이 없거나, 있어도 실적위주의 사업만 전개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노인학대 등 인권침해 사례를 은폐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학대가 일어난 가정의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여 노인학대가 신고되지 못하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 하는 방치된 노인이 발생하기도 한다.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 미흡도

### ● 특집3 \_ 인권으로 행복한 충남

절실하다.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여 홀로 고독사를 맞는 노인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범 도민적 대책이 미흡한 것 또한 현실이다.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의존노인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배려도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돌봄서비스가 보편화되었지만 장기요양 인프라가 밀집되거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립이 되거나 서비스 경쟁에 의해 질적인 수준도 향상되는 반면, 시골지역일수록 본인이 살던 지역을 떠나거나 자녀가 지정해준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등 입소노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 2)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높은 노인일수록 경제적 빈곤과 가족간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복지체계가 전무하여 일하고 싶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 미흡하다.

또 생계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약자의 입장에서 무조건 요구되는 근로계약의 형태를 직종별로 점검하여 노인이 충분한 조건하에서 근로가 가능하도록 노인근로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창출 역시 시군별 시니어클럽이 1개소로 제한되어 있어 시니어클럽 형태의 노인일자리 창출이 미흡하고 시니어클럽역시 단순히 일자리 개수 늘리기의 사업으로 명실상부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변화없는 단순한 일자리갯수 늘리기에 동참하기 보다 노인을 최소한 세 분류 (57세~65세) young-old, 66세~75세 middle-old, 76세~이후 old-old)로 세분화하여 고령 인력 적합 직종을 재편성해야 노인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전개를 더욱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공공기관이나 서비스직종 등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적합직종을 개발하고 1% 의무고용률을 제정하여 노후의 소득보장 및 자아실현을 법국기차원에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역시 요구된다.

## 결론

상기에서 충남 노인인권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결론부분에서는 충남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중심으로 본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방안으로 시설입소 이전과 이후의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노인인권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충남도 자체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한다.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노인의 빈곤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시군별 일률적 형태의 시니어클럽 지원형태를 벗어난 다양한 직종의 노인일자리사업이 가능하도록 정책 선회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에서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제고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효사상의 퇴조와 더불어 노인은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주변부 인생으로 전락해 있다. 게다가 노인차별주의(aging)라는 말이 시사하듯 노인은 단순히 연령만으로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미래의 사회는 노인들이 사회의 주를 이루는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시각의 교정이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당사자, 공무원(소방, 행정), 사회복지종사자 등 노인서비스에 관여하는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아, 청소년, 일반 성인에 대한 공경심과 효사상, 노인의 인권교육을 통해 인간에 대한 존중과 노인에 사회통합의 발판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